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0

제출년월일 : 2023. 8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사업지원 근거 규정과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여, 공익활동에 이바지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사기 진작과 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근거 법령 명시(안 제3조) :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제22조

나. 사업지원 근거 명확화 (안 제3조)

- 재난구호 활동 → 재난대비 및 구호에 관한 활동 및 홍보사업
- 사회봉사 활동 →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
- 보건의료·안전교육 활동 → 보건의료·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
-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(신설)
- 조직사무소 및 물품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 (신설)
- 우수 회원의 선진지 견학 (신설)
-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·체육 행사 지원 (신설)

다. 포상 규정 구체화 (안 제5조) : 포상근거 조례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

1) 입법예고(2023. 5. 4. ~ 2023. 5. 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실-6975(2023.04.28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실-6975(2023.04.28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7960(2023.05.08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활동 지원)”을 “(사업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적십자사 조직”을 “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”으로, “위한”을 “위하여”로, “활동에 대하여”를 “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”로, “지원할”을 “재정적 지원을 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활동”을 “활동 지원 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활동”을 “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난대비 및 구호에 관한 활동 및 홍보사업

3. 보건의료·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

4.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

5.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

7. 조직 사무실 및 물품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

8. 우수 회원의 선진지 견학

9.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·체육 행사

제5조의 제목 “(표창)”을 “(포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활동에 따라”를 “활동을 통하여”로, “대하여 표창”을 “대하여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활동 지원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사업 지원) ----------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---- 위하여 ---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--- 재정적 지원을 할 ---.
1. 재난구호 활동	1. 재난대비 및 구호에 관한 활동 및 홍보사업
2. 사회봉사 활동	2. ------ 활동 지원 사업
3. 보건의료 활동	3. 보건의료·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
4. 안전교육 활동	4.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
5. 지역사회 복지증진 관련 활동	5.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
6.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	6. ---------- 사업
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활동	7. 조직 사무실 및 물품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
<신 설>	8. 우수 회원의 선진지 견학
<신 설>	9.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·체육 행사

제5조(표창)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	제5조(포상) ---------- 활동을 통하여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대하여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----------.

관계법령 발췌

▢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[법률 17778호, 2020.12.29.]

제4조(사무소)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.

제22조(사업 재원의 조성)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▢ 대한적십자사 정관 [대한적십자사규정, 2023.6.11.]

제41조(사업재원조성)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(생 략)

제45조(업무) 적십자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~ 8. (생 략)

9. 각종 자원봉사조직운영 및 사회봉사활동

10. ~ 17. (생 략)

② (생 략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적십자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 사업지원: 연 5,000천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이 영 배
연락처	(033) 330 - 2210